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 등 5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8년 06월 07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06월 11일

3. 제안사유

○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  
(안 제6조)

나.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8, 9, 10, 11조)

다.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2조)

라.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 
(안 제13, 14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시행2015.11.21.)

제정에 따라 충청북도 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과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,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※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 시·도의 경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음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,
-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고,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  - 다만,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4조제3항1)에 규정된 행정조사 중복금지 조항에 따라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발달장애인법”이라 한다)제6조에 따른 3년 단위 실태조사 및 그 밖에 도에서 실시하는 유사 조사와의 병행 실시를 검토하여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.
- 안 제8조에서는 「발달장애인법」에 따른 충청북도의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, 특히 제9조, 제10조, 제11조에서는 독립적인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 사회참여, 취업

---

1) 제4조(행정조사의 기본원칙)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등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,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12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,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의 설치·운영에 대해 규정함.

- 이는 상위법인 「발달장애인법」 제3조<sup>2)</sup>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, 서울시의 경우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를 구성·운영하며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음.
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원활한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.

○ 안 제13조, 제14조는 「발달장애인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, 현재 충북에서는 2016년 12월 ‘한국장애인개발원’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 중에 있음.

※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: ‘16. 12.01. 개소, 연 사업비 488백만원,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134 세종테크노밸리 1층 소재

---

2) 제3조(발달장애인의 권리)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·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.

## 다. 종합의견

- 충청북도의 발달장애인은 총 10,543명(지적9,886명, 자폐 657명)으로 도 내 전체 등록장애인 중 11%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의 어려움은 물론 교육, 경제활동 등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.
- 그러나,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욕구에 비해 인프라 부족 및 지원체계 미흡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보호자의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임.
-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, 가족 등의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부모·보호자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